

[별표 4]

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1. 조직 관련 기준

- 가.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
- 나. 시험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

2. 인력 관련 기준

- 가. 전문가시험평가원 : 상주인력 2인 이상

구분	요건
<p>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자</p>	<p>1)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지능정보 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</p> <p>2)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</p> <p>3)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4년(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3년)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경력이 있거나 5년(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)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</p> <p>4)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</p>
<p>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자</p>	<p>1)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우선구매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</p> <p>2)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(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) 이상의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6년(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5년)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</p>

나. 사용자시험평가관리원 : 상주인력 1인 이상

구분	요건
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자	1)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지능정보 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사용성 평가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2)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사용성 평가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3)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3년(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년)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4년(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3년) 이상의 사용성 평가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4)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사용성 평가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
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자	1)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지능정보 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사용성 평가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2)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(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3년) 이상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(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) 이상의 사용성 평가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

다. 사용자평가원 : 12인 이상의 비상주 인력 풀 확보

- 1) 비장애인(20~40대) 3인 이상
- 2) 전맹시각장애인 2인 이상
- 3) 저시력시각장애인 2인 이상
- 4) 휠체어사용 상지체장애인 1인 이상
- 5) 휠체어사용 뇌병변장애인 1인 이상
- 6) 청각·언어장애인 1인 이상
- 7) 고령자(65세 이상) 2인 이상